

#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양민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47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5월 28일

발 의 자 : 양민규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권수정, 김인호, 김제리,  
김춘례, 김태수, 김평남,  
김희걸, 박기재, 박상구,  
송아량, 이영실, 이정인,  
이태성, 임종국, 장상기,  
장인홍, 전석기, 최 선,  
홍성룡 의원(19명)

## 1. 제안이유

- 우리나라는 1991년 UN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(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)」을 비준함에 따라, 부모의 신분과 상관 없이 아동의 체류권, 교육권,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.
- 그러나 여러 교육지원 혜택에서는 외국인에게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, 특히 보편적 유아교육과정을 위한 누리과정비 조차 외국인의 경우엔 전액 자부담하고 있어 심각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.
- 이에 교육 현장에서 만կ은 외국인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- 또한 다문화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, 다문화교육 사업을 역량과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다문화교육 수요를 충족하고, 사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 사업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3조의2 신설).

나.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의2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다문화가족 지원법」,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사업)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
2.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
3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
4.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사업의 위탁)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센터 및 다문화교육 사업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3조의2(사업)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</li> <li>2.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</li> <li>3.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</li> <li>4.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li> </ol>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1조의2(사업의 위탁)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센터 및 다문화교육 사업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

문서번호

2021051800000004

## 비용추계서

요청인 : 양민규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  
이정수 팀장  
원동아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1.05.18.

회신일 : 2021.05.24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###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# 목 차

- I. 비용추계 요약
-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예산정책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의2(사업)에 따라 비용 발생
- ※ 제3조의2(사업)제1·2·4호 및 제11조의2(사업의 위탁)는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 사업으로,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지출의 순증가나 재정 수입의 순감소는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(붙임2 참고)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#### 가. 대상

- 다문화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(안 제3조의2제3호)

#### 나. 전제

-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,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- 외국유아 유아학비는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가 서울시의회로 제출(2021.5.4.)한 자료 준용
- ※ 공립유치원 교육과정 단가 및 참여 유아수 : 80,000원 318명, 방과후과정 단가 및 참여 유아수 : 50,000원, 264명
-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단가 및 참여 유아수: 260,000원, 366명, 방과후과정 단가 및 참여 유아수 : 70,000원 313명

#### 다. 추계기간

- 5년(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)

#### 라. 방법

-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(2021.5.4.)에서 서울시의회로 제출한 「유치원 재원 외 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방안 보고」를 준용하여 산출(붙임1 참고)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 비용 ≙ 9,342,600천원(연평균 1,868,520천원)

(단위 : 천원)

연도		1차년도 (2021)	2차년도 (2022)	3차년도 (2023)	4차년도 (2024)	5차년도 (2025)	합계
구분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입							
세출	다문화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(안 제3조의2제3호)	1,868,520	1,868,520	1,868,520	1,868,520	1,868,520	9,342,600
	소계(b)	1,868,520	1,868,520	1,868,520	1,868,520	1,868,520	9,342,600
□ 총 비용(b-a)		1,868,520	1,868,520	1,868,520	1,868,520	1,868,520	9,342,600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조도형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분석관(주무관) 원동아

☎ 02-2180-7953

e-mail : dongya1@seoul.go.kr

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 1. 비용요소

- 다문화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(안 제3조의2제3호)

### 2. 세부추계내역

가. 5년간 비용 ≍ 9,342,600천원

- 연간비용 ≍ 1,868,520천원

나. 다문화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비 ≍ 9,342,600천원

- 5년간 다문화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비 =  $\sum_{i=1}^5 (\text{연간비용})_i$

$i$  = 비용추계 연차(2021년 ~ 2025년)

- 연간비용 ≍ 1,868,520천원

※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(2021.5.4.)에서 서울시의회로 제출한 「유치원  
재원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방안 보고」 내용을 준용하여 산출

- 1,868,520천원 = 공립유치원 463,680천원[교육과정(80,000원 × 318명 × 12월)+ 방과후과정(50,000원 × 264명 × 12월)] + 사립유치원: 1,404,840천원[교육과정(260,000원 × 366명 × 12월)+ 방과후과정(70,000원 × 313명 × 12월)]

【붙임1】

#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방안 보고

<'21. 5. 4. 유아교육과>

## □ 배경

○ 교육현장에서 외국 국적 유아(이하 '외국유아')에 대한 차별 문제 제기

- 유아학비 미지원에 따른 외국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\* 으로 외국유아에 대한 유아교육 기회 불평등 초래

\* 외국유아는 유아학비 상당금액(월 33만원)을 포함한 학부모부담금을 유치원 원비로 납부

※ [시의회] 누리과정 혜택을 못받는 외국인 자녀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요청

제291회 교육위('20. 3. 23.), 제292회 예결특위('20. 3. 23.), 제296회 교육위('20. 9. 7.)

[언론보도] 외국 국적 초·중·고생은 지원되고, 유아는 안된다? (오마이뉴스, '21. 4. 12.)

## □ 현황 및 문제점

○ (현황) 만 3~5세의 외국유아, 유치원 280개원에 총 684명 재원

<만 3~5세 외국유아 유치원 재원 현황>

('21. 4. 1. 기준, 단위: 개원, 명)

전체 유치원	외국유아 재원 유치원	전체 유아수	외국유아
789	280 (35.4%)	69,564	684 (1.0%)

○ (문제점) 교육부 「유아학비 지원계획」에 따라 외국유아는 유아 학비 지원대상에서 제외\*

\* 유아학비 지원제외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(난민 예외적 인정)

## □ 타 교육청 동향

○ (경기) '21학년도('21. 3. ~ '22. 2.) 4개 지역(부천, 시흥, 안산, 포천) 시범 운영\*

\* 사업비 약22억원(지자체 15.6억원, 교육청 6.7억원), 외국유아 947명(유아 1인당월) 공립 8만원, 사립

26만원)

※ 「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」(20.11.12. 일부개정)

- (전북)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근거 마련 후 외국유아 지원 예정('21.7월 중)

## □ 대책

- 외국유아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 조례(다문화교육 진흥 조례) 개정 필요

※ 외국유아 유아학비 지원 소요액 : 18.7억원<sup>1)</sup>

---

1) 18.7억원 = 공립유치원 463,680천원[교육과정(80,000원 × 318명 × 12월)+방과후과정(50,000원 × 264명 × 12월)]  
+ 사립유치원: 1,404,840천원[교육과정(260,000원 × 366명 × 12월)+방과후과정(70,000원 × 313명 × 12월)]

## 【붙임2】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

(단위:천원)

구분	세부사업명 (세세부사업명)	2021년 예산	사업내용
제3조의2(사업)제1·2·4호 및 제11조의2(사업의 위탁)	다문화탈북학생지원 (다문화학생교육지원)	1,106,000	(다문화학생교육지원) - 대상 : 다문화 특별학급 설치교 및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운영교 - 내용 :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연계 수업모델 개발연구,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적응지원 - 소요예산 : 1,106,000천원
	다문화학생지원	4,925,710	- 대상 :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공모 지정된 학교, 다문화학생 등 - 내용 : 다문화 밀집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색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연구,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, 다문화 특별학급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, 다문화언어강사배치 등 - 소요예산 : 4,925,710천원

자료 :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